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3차)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장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명		지원규모	협약기관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	은행협조 융자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3차)		3,500억원	15개 협약은행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NH농협은행 1,700억원 별도 진행중)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2,3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협약보증 지원	300억원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16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재해기업자금		16억원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V그룹(무이자융자, 고정)

* '24년 7월 구조고도화 자금 2차 지원예정(기계구입,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I. 이자차액보전 3

1. 일반기업 6
2. 여성·장애인기업 8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10
4. 혁신형기업 12
5. 수출형기업 14
6. 고성장기업 16
7. 고용창출기업 18
8. 산업확충기업 20
9. 사회적친화기업 22

II.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24

III. 협약보증 지원 26

[구조고도화자금]

IV. 기금융자 28

1. 재해기업자금 28

V. 별첨자료

- [별표1] 기금 원금상환 유예제도 31
- [별표2] 제조관련업 32

경영안정자금

I. 이자차액보전 지원(1조400억원)

1. 지원개요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우대1회
	비전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혁신형 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0.5%	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수출형기업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수출기업	30억원	0.2%	
고성장기업	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I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고용창출기업	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10~55억원	1.0%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I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0.5%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III.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IV.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0.5%	이상 기업 50억원이내
	V.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0.5%	우대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6대 전략육성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사회적친화 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억원	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우대1회
	관광업	3억원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 I(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 II(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2.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1조400억원(은행협조용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합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4. 신청 및 접수(3차)

- 신청기간 : 2024. 5. 7(화)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분기별 지원금액>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1차(1월)*	2차(3월)	3차(5월)	4차(6월)	5차(7월)	6차(9월)
합 계	10,400	1,700	1,000	3,500	1,500	1,500	1,200

* NH농협은행 지원규모 1,700억원 현재 접수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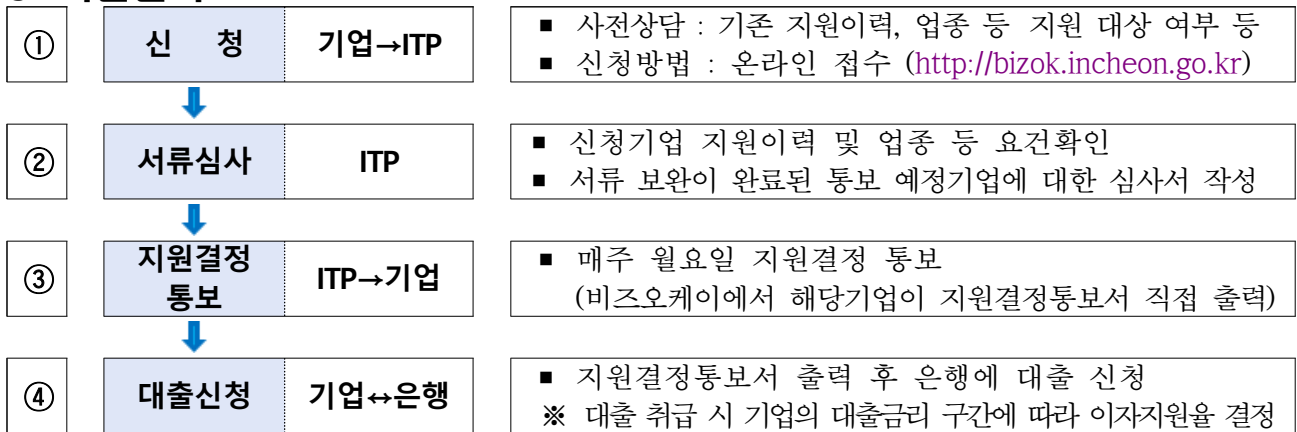
※ 분기별 지원규모는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신규	- 신규 대출건
연장(재대출)	- 대출 연장건(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 만기일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하나,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함 -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지원결정 통보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5. 지원절차



6.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7.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전수 기준)
 -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온랜당대출 등)
 -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채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 일반기업

①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정비업제외
2	사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사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 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최대 10억원 중 작은금액
(단, 2억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m ²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m ²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2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1회 기부업체 : I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II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2.01% ~ 2.75%		0.3%	7.76% ~ 8.25%	
	2.76% ~ 3.50%		0.4%	8.26% ~ 8.75%	
	3.51% ~ 4.25%		0.5%	8.76% ~ 9.00%	
	4.26% ~ 5.00%		0.6%	9.01% ~ 9.25%	
	5.01% ~ 5.75%		0.8%	9.26% ~ 9.50%	
	5.76% ~ 6.25%		0.9%	9.51% ~ 9.75%	
	6.26% ~ 6.75%		1.0%	9.76% ~ 10.00%	
6.76% ~ 7.25%		1.1%	10.01%~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1부 (인천광역시)	

6 기타 유의사항

- 우대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우대1회
	비전기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택1)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품질우수제품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부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	인천시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기업, 뿌리기업 선정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내 우대지원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기업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4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0.5%	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택1)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협약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1부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메인비즈인증서 1부	
	인천빅웨이브모펀드투자기업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6 기타 유의사항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5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0.2%	대출기간 : 6개월, 1년

※ 단, 수출기업은 우대보전을 0.2%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ex)수출입은행 0.3%p 우대)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 수출기업(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일)

구 분	심사요건	비고
수출실적 기업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수출계약 기업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계약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과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1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택1)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 발급)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택1
- 수출실적은 최근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
- 수출계약은 최근 심사시점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 증빙
-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 (받을 때)을 적용
- 수출기업의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원금일시상환) 으로 한정

6

고성장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고성장기업	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I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 분	심사요건	계산식
고성장 기업Ⅰ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개년 평균증가율 = $(A+B) \div 2$
고성장 기업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A = (23\text{년 매출} - 22\text{년 매출}) \div 22\text{년 매출}$ $B = (22\text{년 매출} - 21\text{년 매출}) \div 21\text{년 매출}$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작은 금액	-	=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ex. 최근 3개년 : 2021, 2022, 2023년)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6 기타사항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3) 포괄양수도계약서

7

고용창출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5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고용창출기업	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5억원	1.0%	
	I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0.5%	
	III.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우대1회
	IV.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0.5%	
	V.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분	심사요건	비고
고용창출기업 I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개년 평균증가율 = (A+B)÷2 A=(23년 인원+22년 인원)÷22년 인원 B=(22년 인원+21년 인원)÷21년 인원
고용창출기업 II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 III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기업 IV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고용창출기업 V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 고용창출기업 I 과 II 는 개업일자가 2021.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 단,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증명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우대 서류 (택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완납증명서
	고용우수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Ⅰ~Ⅱ: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창출기업ⅢV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서(인천시) 1부 고용창출기업Ⅳ : 최근월 및 직전 1년전 비교

6 기타사항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

8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8대전략산업, 재해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10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6대 전략육성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분	심사요건
해외유턴기업	1) 완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 (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신규산단입주(예정)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또는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재해기업	재해(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택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사 실 증 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입주계약(확인)서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 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 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빙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6대 전략육성산업 확인서	소정양식(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6 기타사항

- 재해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심사기준을 준용하며, 매출액의 1/3 한도 규정에서 제외 함

9 사회적 친화 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1 지원대상 : 업종무관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0.3~5억원 이내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사회적친화 기업 (업종무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억원	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우대1회
	관광업	3억원	-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매출액구분 없이 항목별 최대한도로 추천

구 분	심사요건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
인천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	1)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을 통해 여성인턴 채용기업 2)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3)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기업

※ 지원업종 무관(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적용 예외), 재무제표상의 매출 무관

※ 정부자금 중복지원 제한 제외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2.00%	0.2%	7.26% ~ 7.75%	1.2%
	2.01% ~ 2.75%	0.3%	7.76% ~ 8.25%	1.3%
	2.76% ~ 3.50%	0.4%	8.26% ~ 8.75%	1.4%
	3.51% ~ 4.25%	0.5%	8.76% ~ 9.00%	1.5%
	4.26% ~ 5.00%	0.6%	9.01% ~ 9.25%	1.6%
	5.01% ~ 5.75%	0.8%	9.26% ~ 9.50%	1.7%
	5.76% ~ 6.25%	0.9%	9.51% ~ 9.75%	1.8%
	6.26% ~ 6.75%	1.0%	9.76% ~ 10.00%	1.9%
	6.76% ~ 7.25%	1.1%	10.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택1)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발급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창조경제혁신기업 추천서	발급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발급처 : 인천시 여성복지관
	관광업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발급처 : 구·군청 등

6 기타 문의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2)873-3800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1
- 인천시 여성복지관 ☎(032)440-6516

II.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2,300억원 내외)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구 분	내용
업종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 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협약기관	지원항목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60% (지원한도 3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원 내외 ■ 지원(가입)기간 : 1년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3.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보험계약 제외 업종
G. 도매 및 소매업	.G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G46107중 골동품, 예술품 및 귀금속 중개업 .G46209중 잎담배 도매업 .G46331 주류 도매업 .G46333 담배 도매업 .G46416,G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G46463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G46492중 귀금속제품 도매업 .G46722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G46799중 충포 도매업 .G47221중 주류 소매업 .G47222 담배 소매업 .G4764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G47830중 귀금속 소매업 .G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H49231중 개인택시 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J. 정보통신업	.J58211,J58212,J58219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K. 금융 및 보험업	.전체
L. 부동산업	.전체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1531중 부동산 컨설팅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N75999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N76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R91121 골프장 운영업 .R91221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R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단, S96911(산업용세탁업), S96913(세탁물공급업)은 보험계약 대상업종으로 운용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체
U. 국제 및 외국기관	.전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개시일은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III. 협약보증 지원(300억원)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구 분	지원대상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항공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물기업 관련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인천혁신plus(+) 기업	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차, 바이오)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협약기관	지원항목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운전자금용)	■ 보증한도 : 최대 5~10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청년기업일 경우 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3p%

3.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개시일은 기술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인천지점 ☎\(032\)830-5630,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부평지점 ☎\(032\)509-1710\)](tel:032-830-5630)

구조고도화 자금

IV. 기금용자(16억원)

1 재해기업 자금

1 지원목적

-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2 지원규모 : 1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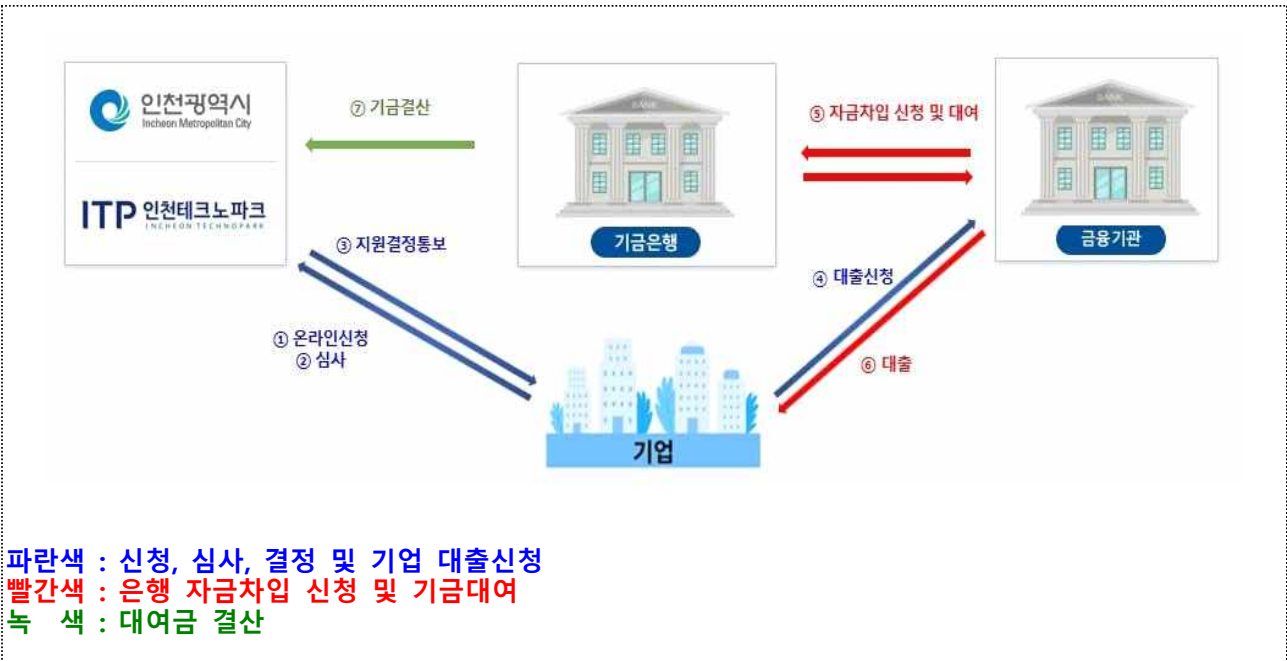
3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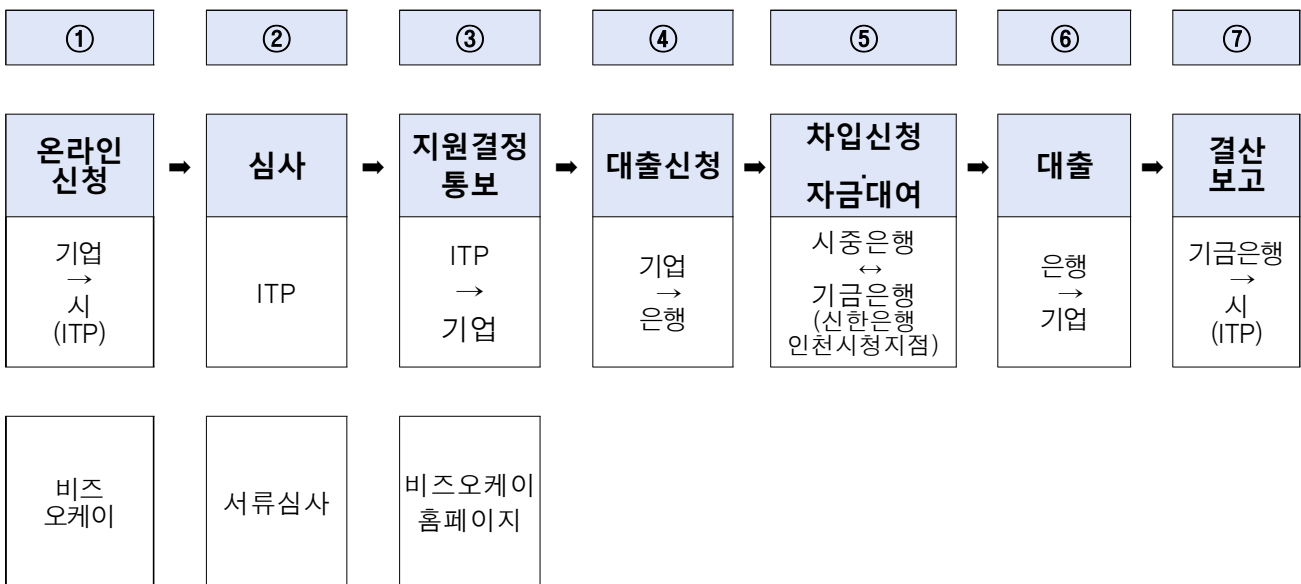
<지원 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4 지원체계



5 업무절차



6 심사방법

- 업종, 지원요건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가능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업체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의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피해금액 이내 지원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 은행협조융자(이자차액보전) 15억원, 최대 18억원

7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 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부대시설(창고)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용도확인	
	신 청 서		온라인신청	
	사 용 계 획 서		소정양식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피해금액 증빙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 시설복구 및 구입예정인(원부자재등) 견적서도 가능	
	국세·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화재, 폭발	화재증명원	소방서 발급	

V. 별첨자료

[별표1]

<원금상환유예 제도>

구 분	내 용
상환유예 대 상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상환유예 사 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市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방 법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상환유예 처리절차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업체→ITP) ⇒ 승인공문발송(ITP→업체·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업체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 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해당업체에 신청서 제출안내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인천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정양식을 업체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

※ 상환유예 신청 : 은행별 분기마감을 고려하여 당월 10일 이전 접수건에 한함

[별표2]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